

문의사항

유다예 관세사 T/070-4353-1594 메일/dyyoo@esein.co.k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20.01.08

『FTA 특례법』일부 개정 안내

I. 개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 조항 일부가 개정 및 신설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Ⅱ. 주요사항

1. 개정 사유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
- 수입자의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 강화
- 원산지 증빙서류의 작성, 발급 관련 처벌 규정 명확화
- 『관세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2. 개정 내용

□ 관세율 적용 우선순위 조정 (§5조 제1항)

- 종전 :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적용 세율 우선 적용
- 개정 : 적용 세율이 같은 경우 수입자가 신청하면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사유 추가 (§9조 제2항)

-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입자는 일반적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과 관계없이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함



문의사항

유다예 관세사 T/070-4353-1594 메일/dyyoo@esein.co.kr

세인 소식지 www.seincustoms.com

2020.01.08

『FTA 특례법』일부 개정 안내

Ⅱ. 주요사항

2. 개정 내용

- □ 경정청구의 의무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변경 (§14조 제3항, §46조 제2항)
 - 종전 :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내용의 오류로 인해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세액 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
 - 개정 :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이 경우 세액 정정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
- □『관세법』의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36조)
 -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 전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하는 내용 반영
- □ 과실범 처벌 규정 명확화 (§44조 제3항)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납부
 -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증빙서류를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과실범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신구조문대비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25호, 2015. 12. 29., 전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83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u><단서 신설></u>	제5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다만,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은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u>제67조의2 및 제68조에 따른</u> 세율은 협정관세의 세율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생 략)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u>대해서</u> 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요구할 수 없다.	②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생략)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입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 (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	③ 수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 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 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 을 환급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ㆍ경정 및 환급 에 관하여는 <u>「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u>, 제 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생략)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 ② - - -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 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 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 · 세액보정 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 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 - - -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 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 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 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 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 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 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 을 환급하여야 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 · 경정 및 환급 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 · 제2항, 제 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 48조를 준용한다.

제14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현행과 같음)

- -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신청 또는 수정신 - - - - - - . <후단 삭제>
- ③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 류를 작성한 자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 한 세관장으로부터 <u>원산지증빙서류의</u>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 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세관<u>장에게 세액정정 신청 또는 경정</u> 청구를 할 수 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 고 및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 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	
│ 다에 해당하는 경구에는 해당 구립물품에 내하여 됩 │ 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정단세를 식용하시 아니할 구 있다. 이 경구 세단경는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	
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u>제38조의3제6항</u>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	제36조(가산세) ①
에 대하여 <u>「관세법」</u> 제38조의3제1항 또는 <u>제4항</u> 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	(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
산세로 징수한다.	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
	<u>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u>
	<u>제6항</u>
	<u>관세액(이하 이 조에서</u>
1 ()] =1)	. 1 (취례가 가ბ)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부족세액</u> 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관세법」에 따른 당초 납부기한(제9조제1항에	가. 법정납부기한(제9조제1항 또는 제2항
따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한 수입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4항에 따라 관세	
를 환급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다음의 어느	제9조제5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일수	<u>항</u>
	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
(1)1) 「관세법」 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일	<u>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u> (1)1) 삭제
(2)2)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납세고지일 나. (생 략)	<u>(2)2) 삭제</u> 나.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
	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② 제1성에도 불구하고 무립자가 제14조제2성에 따다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제1항에 따른 원산	
구성선고를 하는 경구도시 세17도세18에 따는 된산 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서 고시된 중시된 문서 전에 무경진끄달 야근 경투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u>가산세</u>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u> <신 설></u>	<u>1.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u>
<u><신 설></u>	2.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 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 액은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 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제4항 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벌칙) ①·②(생 략)	제44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협정</u>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를 한 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③ <u>과실로 협정</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 <u>신</u> <u>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u> 를 하지 아니한 자	
	<u>신청 또는 수</u> 정신고
 4. (생 략)	<u> </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